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온라인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온라인학교의 시설·설비 기준(제2조)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온라인학교 교사의 기준면적, 시설·설비·교구의 종목 및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나. 온라인학교의 수강대상 및 학점인정(제4조·제5조)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과목 이수에 따른 학점 인정의 근거를 마련함

다. 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제7조·제11조)

온라인학교의 특색을 반영하여 과목 개설 기준을 제시하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운영하도록 규정함

라.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제13조)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마. 학생 소속학교의 협력 의무(제18조)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온라인학교에서의 과목 수강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 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설비 기준) ① 온라인학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사용 대지를 말한다)
3. 방송·통신 장비, 원격강의실, 다목적 교실 등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및 대면 수업의 운영을 위한 시설·설비
4. 원격수업 및 대면 수업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비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온라인학교 교사의 기준면적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 수 및 과목 개설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시설·설비·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학교 규칙) 온라인학교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교 명칭
2. 학기 및 휴업일
3. 교과·수업일수·고사(考查)와 과목 이수율의 기준
4. 과목별 수강 학생 수
5. 과목 개설 원칙과 절차
6. 과목 수강생의 선정 기준, 수강 신청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학생 포상,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요청의 요건과 절차,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칙 개정 절차
9.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수강대상)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초·
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등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고등
기술학교의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학점인정) 학생이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는 법 제
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제6조(학생생활지도 등) ① 온라인학교의 장과 교원은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강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에게 수강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육과정) ① 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 온라인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과목을 개설하되, 온라인학교의
과목 개설 신청·개설 기준 등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2. 학생 및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온라인학교의 장이 해당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학기) 온라인학교는 매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되,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일정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9조(수업시각) 온라인학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과목 수강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일정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0조(휴업일 등) ① 온라인학교의 휴업일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수업운영방법) ① 온라인학교의 수업 운영 방법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생활기록) ① 온라인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한다.

1. 출결상황: 과목별 출결사항
 2. 교과학습발달상황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학생의 소속 학교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온라인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원 수 및 과목 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의 경우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④ 온라인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선출 방법·임기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온라인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시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회의 소집 일정 및 방법, 의견 수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온라인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온라인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시·도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와 시·도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명령) 시·도 교육청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학생 소속학교의 협력 의무 등) ①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온라인학교 수업 참여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징계 요청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온라인학교 과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교사를 둘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온라인학교와 학생이 소속된 학교 상호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의 시설·설비, 교직원, 교육과정 운영 등 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연 락 처	(044) 203 - 6725